

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5. 29.(금), 16:00

2. 장 소 :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송도균 부위원장
이경자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- (주)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 (2009-23-113)

○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제15조의2와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 따라 (주)디지털미디어넷이 신청한 (주)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및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원안대로 의결함.

- 주요내용 : (주)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의 최다액출자자 김응태의 지분 중 38.0%를 인수한 (주)디지털미디어넷이 기존 23.0%를 합산하여 61.0%로 최다액출자자로 변경

- 주식 변동내역

SO명	변경 전		변경 후	
(주)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	김응태	58.0%	(주)디지털미디어넷	61.0%
	(주)씨앤엠	19.0%	김응태	20.0%
	(주)디지털미디어넷	23.0%	(주)씨앤엠	19.0%

2) 200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(2009-23-114)

○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09년 12월 31일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사(20개 방송국)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.

-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

구 분	대표자	디지털TV	FM라디오	계
계 7개사		19	1	20
한국방송공사 ¹⁾	이병순	14		14
한국교육방송공사	구관서	1		1
부산문화방송(주)	전용성	1		1
광주문화방송(주)	운영관	1		1
대전문화방송(주)	유기철	1		1
울산문화방송(주)	황희만	1		1
(재)CBS ²⁾	김순권		1	1

주1) : 부산·울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창원·제주 각 제1·제2DTV 주2) : 울산

- 재허가 심사방향

-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조건 이행 여부, 향후 사업계획 평가
-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되고 있는 디지털TV 방송국에 대한 방송평가는 아날로그TV 방송국의 평가결과를 적용

3)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(2009-23-115)

- 서병조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개정(안)을 심의하였으나, 일부 용어를 수정·보완하여 재 상정기로 함.

4)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에 관한 건 (2009-23-116)

- 서병조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09년도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(안)을 심의하였으나, 일부 조항을 수정·보완하여 재 상정기로 함.

5)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(2009-23-117)

-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, 동 시행령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한 '구체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기준'을 마련하기 위해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고시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- 고시개정안 주요내용

-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
-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생성 규칙 마련
-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기간 규정
-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규정 등

사. 보고사항

1) 2009 전파법 개정에 관한사항

- 차양신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(VSAT)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, 허가받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승계 근거 마련,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에 대한 정기검사 연기 및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에 관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.

2) 「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

- 김준상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개정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시행('09. 7. 23)을 앞두고 동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함.

-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

□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조건 부과 사항

-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
 -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사항
 -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
 -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

□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사항

-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(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)
 -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
 -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
 -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 취소

아. 기 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. 6. 3(수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(18:05)